



의안번호	제 2015 - 9호
보 고 연 월 일	2015. 3. 2. (제6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88차 전체 회의	5
1. 일시 · 장소	5
2. 참석자	5
3. 주요 안건	5
4.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5
5.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24
II. 향후일정	32

<별첨자료>

강동혁,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황병헌,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I. 제88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2. 16.(월) 16:00 ~ 19:00
- 장소 : 법원도서관 멀티미디어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노수환,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식품 · 보건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4.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1) 개요

-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후 식품범죄 적용 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되거나 구성요건이 신설 되었으며, 법정형에도 일부 변동이 있었음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존의 식품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설정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 · 보완할 필요
- 법률변경 사항이 있는 ‘허위표시’ 대유형,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대유형 중 1유형(가짜 등 기준 ·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및 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중

심으로 수정방안 검토

- ① 신설된 구성요건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 및 법정형이 하향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대상 제외 여부
- ② 변동된 법정형의 양형기준 반영 여부 및 그 구체적 방법
- ③ 법정형 체계에 맞지 않는 기존 양형기준의 문제점 등 보완

(2) 개정법률 주요 요지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조리 판매 · 제공자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법 제15조) : 3년 ↓ ⇒ 7년 ↓
-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 신설(제16조의2)
: 10년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종래 적용대상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던 것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
-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 처벌규정 신설(제119조 제1호의2) : 3년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 허위표시 유형
 -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등을 늘리는 행위(가축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 ⇒ 10년 ↓
 -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 3년 ↓ ⇒ 10년 ↓
 - ② 그 외 내용의 허위표시 : 3년 ↓ ⇒ 5년 ↓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①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10년↓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유해 축산물 제조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10년↓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10년↓

(라) 식품위생법

○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3년↓ ⇒ 10년↓

② 그 외 내용의 허위표시 : 3년↓ ⇒ 5년↓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①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7년↓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유해식품 제조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10년↓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7년↓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5년↓ ⇒ 10년↓

② 그 외 내용의 허위표시 : 종전 법정형 유지(5년↓)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①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 10년↓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위해건강기능식품 제조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10년↓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 10년↓

(바) 화장품법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된 화장품 판매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향 : 3년↓ ⇒ 1년↓

나. 허위표시 유형

(1) 양형기준 적용범위

○ 다음과 같이 의견일치

(가) 상습범,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포함

- 기본적 구성요건이 이미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 해당 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 고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중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조항 : 포함

- 현행 식품범죄 양형기준은 우수표시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삼고 있음
-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 또한 기망성을 내포한 행위로서 허위 표시행위 구성요건과 입법취지가 유사하며, 동일한 조문에 배치되어 있고 법정형도 동일

(다)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 제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됨
- 허위표시 유형의 형량범위는 대부분 화장품법의 법정형 상한인 1년을 초과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위반죄를 기존의 양형기준 형량범위에 포섭시킬 수 없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 또한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형량범위를 세분해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2) 형량범위 또는 양형인자 관련

○ 다음과 같이 의견일치

(가)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법정형 상한이 10년으로 상향됨
- 한편,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죄에 대해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
 -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의 하한 설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1년-10년
 - 식품위생법 : 1년-7년¹⁾

1) 식품위생법의 경우 재범 이전의 전과가 금고 이상의 형일 것을 요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년-10년

- 위와 같이 '5년 이내 재범'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두어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5년 이내 재범'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야 함은 분명
- 이 경우 재범이 아닌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까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게 되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인자가 특별양형요소로 중복반영되는 문제가 발생
-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과의 체계정합성, 재범과 초범의 처벌수위를 달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허위표시 유형에서 기존에 가장 높았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의 법정형 상한과 3년의 차이가 나지만, 폭력범죄,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법정형이 3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 바 있음
 - 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 폭처범위반(공동상해) : 10년6월 이하 징역
 - 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 폭처범위반(공동공갈) : 15년 이하 징역

(나)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에 대한 5년 이내 재범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앞서 본 이유와 같음
- '동종누범'이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와 관련한 특별가중인자의 중복적용을 방지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누범'

(다) 상습범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설정(일반범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라)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의 법정형이 상향됨(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와 함께 허위표시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정형도 동일
- 법정형 상향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양형인자 설정과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

(마)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양형인자 수정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허위표시 유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허위표시 유형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법정형 차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들, 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가축에 대한 부정행위) 위반죄를 형량범위 설정의 기본으로 삼고,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범죄들, 즉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구성요건들에 대하여 감경영역에서 출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형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

-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명칭이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허위표시행위의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으로 같고(동법 제117조),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되는 등 종전의 양형인자 표현을 그대로 둘 경우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됨
- 당초의 양형인자 설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인 범죄들을 형량범위 설정의 기본으로 삼되,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구성요건들을 모아 적극적 방식으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구성요건들의 행위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인자의 명칭을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수정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바) 기타 법정형 상향 :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음

-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중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하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제15조)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 그러나 법정형이 동일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제14조)과 비교할 때 양형기준 적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형량범위나 양형인자 등에 별도 반영할 필요 없음
- ②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제외한 표시·광고 등 행위의 법정형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 그러나 법정형이 동일하고(5년 이하 징역) 구성요건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양형기준 적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형량범위나 양형인자 등에 별도 반영할 필요 없음

(사)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양형인자에서 제외

- 현행 양형기준에는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음
- 그 중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위반

- ①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 ②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앞서 살펴본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법정형 : 1년 이하 징역)이 유일함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을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은 앞서 살펴봄 ⇨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해야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연적 이유 없음
 -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경우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의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됨과 동시에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게 되므로, 사실상 기본영역에서 출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인 범죄를 형량범위 설정의 기본으로 삼고,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인 범죄들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기로 한 원칙에 대해, 약사법위반 범죄에 대해서만 법정형 차이를 무시하고 예외를 설정할 만한 필연적 이유 없음
 - 위 ①의 경우는 행정법규 위반의 성격이 짙고, 위 ②의 경우도 인체에의 위해성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님
- (아)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양형인자 수정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행 양형기준에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다수 공범이 역할 분담한 유형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인자를 설정할 필요
- 이러한 경우를 통상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
-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표 및 집행유예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u>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u>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u>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u> ○ <u>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u>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u>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u> ○ <u>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u>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 /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3유형인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u>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u>	○ 교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1유형인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u>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u> ○ <u>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u>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1,2유형

(1) 양형기준 적용범위

- 다음과 같이 의견일치
-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포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제벌 처벌 규정이 각 신설됨
- 기본적 구성요건이 이미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 해당 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 고려

(2) 형량범위 또는 양형인자 관련

○ 다음과 같이 의견일치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1, 2유형)

○ 문제점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1유형(가짜 등 기준 ·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법정형 : 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과 더불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동일한 유형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음²⁾

2)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부정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의 경우 역시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동일한 유형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음
- 위와 같이 법정형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범죄들을 각각 하나의 소유형에 묶어두고, 그 중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1유형과 2유형의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아짐
- 특히 각 영역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 양형기준과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개별사안에서 적정한 형량을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1, 2유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그 외의 경우로 다시 나누어 유형을 세분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치 않으며, 하나의 대유형 안에 지나치게 많은 소유형이 분류되게 됨

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유형을 그대로 둔 채 각 영역의 하한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량범위를 수정하게 될 경우 각 형량범위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그 외의 경우를 포괄하는 적절한 형량 하한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음
- 결국 기존의 유형분류와 형량범위를 유지한 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함으로써, 법정형이 낮은 구성요건 범죄들의 경우 감경영역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사실상 법정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나) 법정형 상향(2유형) :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음

- 위해식품, 위해건강기능식품, 썩은 축산물 등의 판매 등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처벌규정의 법정형 상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됨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양형기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중심으로 형량범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이 법정형 상한이 일부 상향된 점을 형량범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다) ‘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에 대한 5년 이내 재범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위해식품, 위해건강기능식품, 썩은 축산물 등의 판매 등 죄에 대해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
-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의 하한 설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1년-10년
 - 식품위생법 : 1년-7년³⁾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년-10년

3) 식품위생법의 경우 재범 이전의 전과가 금고 이상의 형일 것을 요하지 않음

- 허위표시 유형과 마찬가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동종누범’이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와 관련한 특별가중인자의 중복적용을 방지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누범’

(라)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양형인자 수정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앞서 본 허위표시 유형의 검토내용과 동일

(3)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표 및 집행유예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u>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u>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u>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u>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자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5.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1) 개요

-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 양형기준 의결 후인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12. 6. 8. 시행)되는 등 마약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현행 양형기준 시행 후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나. 마약범죄 관련 법률 개정의 반영

(1)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가) 마약류관리법 (2011. 6. 7. 개정, 2012. 6. 8. 시행)

- 벌칙 조항 중 각 호의 배치가 변경되었고, 정의 조항(제2조)의 정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이 수정되었으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벌칙 조항에 반영함
- 그 밖에 법 문장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나, 양형기준 대상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법정형 등 주요 내용의 개정은 없음
- 위 개정 후 2013. 7. 30.과 2014. 3. 18. 일부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졌으나 양형기준에 반영할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님

■ 제58조 : 임시마약 반영, 인용 조항 수정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①항	1호	마약·임시마약 ⁴⁾ /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같은 목적 소지	무기 or 5년 ↑	
	2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 원료물질/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 소지, 소유		

	3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제조·수출입·매매·매매 알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4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원료식물/ 성분추출, 수출 입 또는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5호	대마/ 수입·수출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6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 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임시마약/ 수수·조제·투약·제공 향정신성의약품·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 수·조제·투약·제공		
②항	영리 목적 상습 ①항 행위		사형, 무기 or 10년 ↑	
③항	①, ②항 미수범			
④항	①, ②항 목적 예비·음모		10년 ↓	

■ 제59조 : 벌칙 조항 각 호 배치 변경, 인용 조항 수정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①항	1호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마약 원료식물 재배 또 는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1년 ↑	구법 2호
	2호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관리·수수·성 분추출		구법 3호
	3호	헤로인 등/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투약·투약 위해 제공		구법 4호
	4호	마약·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매매·매매알 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구법 5호
	5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소지·소유·사용·관리		구법 6호
	6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원료 식물/ 매매·매매알 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구법 7호
	7호	대마/ 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같은 목적 소 지·소유		구법 12호

-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의 위험이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8호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대마·대마초 종자 꺾질/ 흡연·섭취		구법 13호
	9호	마약·임시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한외마약/ 제조		구법 1호
	10호	제2조 제3호 다목 향정/ 제조·수출 또는 같은 목 적 소지·소유		구법 8호
	11호	대마·임시대마/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임시대마초/ 재배		구법 11호
	12호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법에 기하지 않은/ 마약 류 취급		구법 9호
	13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 용자 아닌 자/ 향정 수출입·제조 또는 의약품 제 조		구법 10호
②항	상습 ①항 행위		3년 ↑	
③항	①, ②항 미수범			
④항	①항 12호 범죄 예비·음모		10년 ↓	

■ 제60조 : 벌칙 조항 각 호 배치 변경, 인용 조항 수정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①항	1호	마약·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사용 마약·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관련 금지행위를 위 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10년 ↓ or 1억원 ↓	구법 2호
	2호	제2조 제3호 나·다목 향정/ 매매·매매알선 ·수 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처방전 발급		구법 3호
	3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 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구법 4호
	4호	마약류취급자 등 업무 외 목적 마약 사용 등·마약 류취급자의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부터의 마약 양 수·마약류소매업자 아닌 자의 마약 판매·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마약 투약 등·마약류취급학술연 구자 아닌 자의 학술연구 목적 마약 사용·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무허가 마약 투약 등		구법 1호
②항	상습 ①항 행위		1/2 가중	

③항	①, ②항 미수범		
----	-----------	--	--

■ 제61조 : 벌칙 조항 각 호 배치 변경, 인용 조항 수정 등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①항	1호	향정(제2조 제3호 가목 제외)·대마/ 사용 향정(제2조 제3호 가목 제외)·대마 관련 금지행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5년↓ or 5 천만원↓	구법 3호
	2호	마약 원료식물 재배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구법 1호
	3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원료 식물/ 흡연·섭취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 소지·소유		구법 2호
	4호	대마·대마초종자껍질 흡연·섭취 같은 목적 대마·대마초종자껍질 소지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껍질 매 매·매매알선		구법 8호
	5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 매매·매매알선 ·수수·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처방 전 발급		구법 4호
	6호	대마·임시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 보관		구법 7호
	7호	마약류취급자 등 업무 외 목적 향정 등 사용 등·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부터의 향 정 등 양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닌 자의 학술 연구 목적 향정 등 사용		구법 5호
	8호	무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제조		신설
	9호	마약류소매업자 아닌 자의 처방전에 기한 향정 판 매·마약취급의료업자 아닌 자의 의료 목적 향정 투약 등		구법 6호
	10호	마약류소매업자/ 마약·향정/ 전자거래 통하여 판 매		신설
②항		영리 목적 상습 ①항 행위	1/2 가중	
③항		①, ②항 미수범		

(나) 화학물질 관리법(2015. 1. 1. 시행)

- 환각물질 섭취·흡입 등에 대한 처벌조항인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는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처벌 조항 변경으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변경됨

(2)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의 반영 방안

- 벌칙 조항 각 호의 배치 변경, 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임시마약의 반영 부분은 현행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 부분을 변경하면 족함
-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대상범죄⁵⁾ 및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음

다. 기존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수정방안

(1) 문제제기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 유형과 수출입·제조 등 유형은 그 가별성과 법정형 등을 반영하여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비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높게 설정되어 있음
- 그런데 실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필로폰에 대하여 적용되는 매매·알선 등 2유형 (감경 : 8월 - 1년6월 / 기본 : 1년 - 2년 / 가중 : 1년6월 - 4년), 수출입·제조 등 3유형 (감경 : 2년6월 - 5년 / 기본 : 4년 - 7년 / 가중 : 5년 - 8년)을 중심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실무의 양형 관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하여 실무의 양형 관행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포섭할 수 있도록 현행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를 신설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제기

5) 일부 신설된 구성요건은 허가 등을 위반하거나 판매방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기존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구성요건이 상이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도 없음

○ 그 구체적인 방안 및 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참조

- ①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의 적용범위 축소
 -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의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양형의 타당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동종누범’ 또는 ‘동종전과(단,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한함)’
- ② 특별감경인자 중 ‘중요한 수사협조’의 적용범위 확대
 - 기존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감경인자인 ‘일반적 수사협조’를 ‘수사협조’로 통합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③ 특별감경인자 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분리
- ④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만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⑤ ‘유통의 목적·결과 없는 수입(수출입·제조 등 유형)’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마약류 수입·제조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는 금지 마약류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제조되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유통의 목적 없는 개인 소비 목적의 수입·제조인 경우 또는 수입·제조 후 실제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벌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
- ⑥ ‘취급한 마약류가 소량에 그친 경우(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유형)’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취급한 마약류가 소량인 경우 가벌성에 차이가 존재

- ⑦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매매·알선 등 유형)'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
- 현행 양형기준상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에 대하여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판매와 매수, 제공과 수수는 그 가벌성에 큰 차이가 있음

(2) 전문위원단 검토

○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

-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양형인자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은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실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정인자를 신설하거나 특별가중인자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통계분석 등의 실증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해 종전 실무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양형을 권고하고자 했던 것이 기존 양형기준의 정책방향이라 할 것인데, 그 방향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기준에 대한 반성적 고려나 사회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함
 -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범죄에 대해 오히려 처벌기준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될 수 있음
- 다만, 주무위원이 제시한 검토안 중 위 ⑦의 경우에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매매·알선 등 유형)'를 특별감

경인자를 신설하여 현실과 실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판매와 제공은 타인을 마약범죄로 유인하는 범행인 반면 매수와 수수는 자신의 투약 범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실무상 투약·단순소지 등 범행과 관련된 매수·수수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함

(3) 양형기준 수정안(매매·알선 등 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u>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u>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중누범

■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상습범인 경우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협조 ○ 자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매매·알선 등 유형)</u>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II.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 검토 등
- 일시 및 장소 : 미정